충남대학교 BK21 four(2021.02.19.)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사업 관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BK21 four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BK21 four 사업 지원을 받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BK21 four 사업단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충남대학교 BK21 four 사업단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에 적용한다.

제 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하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 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차 연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제 4조(목적)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조직구성) 사업단은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의사결정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6조(사업단의 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 7조(사업단의 부단장) ① 사업단의 부단장은 참여교수 중에서 사업단의 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의 장이 보직수행, 파견, 연구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권한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참여교수)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해당 사업단이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하다.

- ② 참여교수는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등의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들을 지도함으로 써 사업단 참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참여교수의 사업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내다른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참여교수 교체 시 전임 참여교수 지도의 참여대학원생은 신규 참여교수 또는 사업단내 다른 참여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⑤ 참여교수의 신규 참여, 교체는 사업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전문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9조(참여교수의 교체)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건강상의 이유나 퇴직 등 참여교수의 일산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 ③ 1년 이상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 및 연구지원 업무에 지장 을 초래한 경우

제 10조 (운영위원회 구성) 본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교수 및 기타 운영위원회의 참여가 결정된 인원은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문서의 형태로 기록되어
- 야 하며, 이는 사업단 구성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의결사항의 경우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BK사업 성과 등에 대한 관리 및 검토, 분야별 전문가의 융합적 연계
- 와 전문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구 장학생의 평가 및 선정
- ②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렵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임·면 및 상벌,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③ 연도별 세부업무계획의 수립 및 사업방향 제시, 재/행정지원의 효율성 검토.
- ④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1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본 사업단은 BK 사업의 성과 관리 및 모니터 링, 자문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 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3명,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통해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BK 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분야별 전문가의 융합적 연계 등 사업단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자문으로 한다.
- ④ 기타 사업 추진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⑤ 임기는 각 사업단계 기간 내에 2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 장학생 선발 및 운영

제 13조(목적) 이 지침은 BK21사업을 위한 충남대학교 BK21 four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이하 '사업단')의 연구 장학생 선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조(대상)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된 석·박사과 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 ② 입학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제 15조(추천)

① 사업단 참여교수는 참여대학원생을 연구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 16조(평가기준 및 선정) 연구 장학생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장학생 평가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 장학생 선정 평가표'를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며, C등급 이상을 받은 대학원생을 연구 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최종 사업단장이 선정한다. 단, 사업시행 해인 2020년도의 경우 연구 장학생 평가 및 선발은 9월에 시행한다.
- ② 평가에 이의가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사업단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조(혜택)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장학생과 참여대학원생으로 구분하며, 연구 장학생은 매월 예산에서 규정한 연구 장학금 지급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 을 수 있으며,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학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장학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규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BK장학생의 수 및 지원 금액은 재원의 범위 및 상위규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원 방법은 학기, 분기 또는 월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 금액은 제 1항의 금액을 뭘 기준 금액으로 활용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의 융복합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활동비(회의비, 문헌구입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를 연구계획서를 심사를 통해 연구주제의 적절성, 연구역량, 연구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참여대학원생의 대상으로 해당 년도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학술대회 수상 등의 기준과 BK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성과의 실적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의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 18조(임무)

① 선정된 연구 장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성적증명서를 사업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 장학생은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 기준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 여할 의무가 있다.
- ③ 연구 장학생은 1인당 최소 0.5편 이상의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참여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논문게재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관련 의무를 수행한다.
- ③ 취업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 운영규정 및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 21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4장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업단 전담 행정원 활용 지침

제 20조(목적)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업단 전담 행정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조(신진연구인력 구성)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로 구성한다.

제 22조(신진연구인력 자격)

- ① 박사후연구원은 사업단의 목표와 부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 ② 계약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사업단의 목표와 부합하는 1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로서 충남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 제 23조(신진연구인력 채용) 신진연구인력 임용에 관한 사항은 BK21 four 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 또는 추천에 의하여 모집하며 아래에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 ① 제출서류 신진연구인력 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 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등 사업단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② 서류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평가, 신진연구인력

전공심사 기준 및 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며 사업단장은 서류심사 결과 순위에 의하여 면접대상자를 결정한다.

- ③ 면접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면접심사 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
- ④ 채용절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총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1순위자를 사업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제 24조(신진연구인력 계약기간)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기간은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임용계약기간의 변경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5조(신진연구인력 역할) 신진연구인력은 아래 각호와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좋사하여야 한다

- ① 사업단 내 공동연구 또는 단독 연구 수행
- ② 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③ 필요시 사업단 소속 학과의 강의 및 특강
- ④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수행
- 제 26조(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
- ① 박사후 과정생은 교내외 포함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② 계약교수는 교내 강의는 제한 없이 강의할 수 있으며, 교외강의는 6학점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타교 교외강의 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제 27조(신진연구인력 임무) 신진연구인력은 아래 각호 중 한 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계약기간 1년 기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재
- ② 학술저서 1편 이상 출간
- ③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단과 관련 있는 성과 활동
- 제 28조(신진연구인력 처우)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 및 처우는 사업비에서 월 300 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하며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련 기

준에 따른다.

제 29조(신진연구인력 해지) 신진연구인력이 역할 및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계약기간 중이라도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0조(산학협력전담인력 자격) 사업단 산학협력 업무경험자 또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로 한다.

제 31조(산학협력전담인력 임용절차) 산학협력전담 인력의 선발은 공개모집 또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 32조(산학협력전담인력 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3조(산학협력전담인력 임무) 산학협력전담 인력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하며 사업비 집행 및 관련 증빙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 34조(산학협력전담인력 처우) 산학협력전담 인력에게 지급할 보수는 사업단 예 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 35조(산학협력전담인력 해지) 산학협력전담 인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해지 할 수 있다.

- ① 제32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② 운영위원회 해촉 의결이 있을 때

제 36조(사업단 전담 행정원 자격) 사업단 전담 행정업무경험자 또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로 한다.

제 37조(사업단 전담 행정원 임용절차) 사업단 전담 행정원의 선발은 공개모집 또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 38조(사업단 전담 행정원 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9조(사업단 전담 행정원 임무) 사업단 전담 행정원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및 관련 증빙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 40조(사업단 전담 행정원 처우) 사업단 전담 행정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사업단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 41조(사업단 전담 행정원 해지) 사업단 전담 행정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해지할 수 있다

- ① 제32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② 운영위원회 해촉 의결이 있을 때

제 5장 장·단기 해외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운용 지침

제 42조(목적) 해외 장·단기 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또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3조(장기해외연수) ① 사업단에서 규정하는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3개월 이상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 ② 장기 해외연수지원 대상은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사업단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단 해외연수 운영 세칙"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에 포 학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의 선발기준
- 2. 해외연수생의 지원·선발기준
- 3.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기준
- 4. 해외연수 지원자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5. 해외연수생의 의무
- 6. 기타 상위규정 등에서 정한 사안
- ④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예산 범위 및 대학 여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⑤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세부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4조(단기해외연수) ① 사업단에서 규정하는 단기해외연수는 국제 수준의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주 이내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 ② 단기해외연수 지원 대상은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사업단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③ 단기해외연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은 참여 교수 또는 신진연구인력을 연수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5조(국제학술대회) 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논문발표자(제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지원하며, 특별한 경우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 ② 체재비는 15일 이내에 한해 지원 될 수 있다.
- ③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실제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는 실비용 혹은 본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국제학술회의 참가일 1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신청서류
- 1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1부
- 2.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1부
- 3.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팜플렛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 4. 항공권 INVOICE 1부
- 5.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⑤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지체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제출서류 :
- 1. 국제학술회의 참가 출장보고서 1부
- 2. 항공 탑승권 원본 (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신분 및 출입국사실 확인가능한 면) 1부
-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 5.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⑥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 46조(해외석학 초빙 관련 운영) ① 해외석학은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가 있는 인사로서, 본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인사로 한다

- ② 해외석학 초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1. 여비 및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는 대학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에서 활용할 경우 '국내여비기준'을, 해외현지에서 활용할 경우 '국외여비기준'을 적용한다.
- 2.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초청 자문료(강사료)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 6장 성과급 지급 지침

제 47조(목적) 참여인력(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직원, 사업단전 담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사업 참여인력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
- ② 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전담직원과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성과급은 산학협력전담직원 인건비 또는 교육연구단 운영비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4단계 BK21 four 사업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친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BK장학생 선정 평가표

성 명: 학 번:

학위과정 :

지도교수: (인)

	평 :	가 항 목		기준 poin (P)	년 실적(편수)	환산점수 합	환산Point
		SCI, SCIE A&HCI, S		200P			Р
	논문	7	등재(후보지)	100P			Р
		국내 논문	일반지	50P			Р
연구 실적		저서		100P			Р
CTES		ᄀᆐᇵᄉᇊ	구두	60P			Р
	학술	국제학술[포스터	40P			Р
	발표		구두	30P			Р
		국내학술[포스터	20P			Р
※ 연구실	적은 최근	3년 이내 실	실적을 기준으로	로 적용하며,	ISSN 또는 ISE	BN이 있는 실	덕에 한함
성적 평가		대학원/학부	성적	200P			점
연구 능력		연구 성실	Į S	100P	-	상 중 하	점
27 64 		연구과제 침	l여도	100P	-	상 중 하	점
	- 善	계 (점)			1000P		점
총 계 (점)	ē	등 등	A: 700이상 B: 500이상 C: 300이싱 D: 300미민	~700미만 ~500미만	£	؛ 정결과	합 / 불

평가 운영위원 성 명 :

<연구 장학생 선정 평가기준>

- 1) 연구실적 및 연구능력 평가는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활동사항을 평가 에 반영한다.
- 2) 석사과정의 성적평가는 석사과정의 평균평점을 반영한다. 단, 석사과정 성적이 없는 경우는 학부과정의 평균평점을 반영한다.
- 3) 박사과정의 성적평가는 박사과정의 평균평점을 반영한다. 단, 박사과정 성적이 없는 경우는 석사과정의 평균평점을 반영한다.

BK참여대학원생 선정 기준 조견표

	평 :	가 항 목		기준	실적(편수)	환산Point
		901.9	CIE. SSCI.	주저자 또는 교	신저자 참여 2편 이상	200
		l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참여 1편	180
		A&HC	, SCOPUS	공동저자 참여	1편 당 (최대 150)	50
					3이상	100
					2이상 3미만	90
					1이상 2미만	80
			등재(후보지)	환산점수의 합	0.5이상 1미만	70
					0.3이상 0.5미만	50
		국내 논문			0.2이상 0.3미만	30
	논문				3이상	50
					2이상 3미만	40
			일반지	환산점수의 합	1이상 2미만	30
			207	000146	0.5이상 1미만	20
					0.3이상 0.5미만	10
연구 실적					2이상	100
연구 열직					1이상 2미만	90
			저서	환산점수의 합		
					0.5이상 1미만	80
	학술 발표				0.5미만	70
			l		1.5이상	60
			구두	환산점수의 합	0.6이상 1.5미만	50
		국제학술대	1 21		0.6미만	40
					1.5이상	40
			포스터	환산점수의 합	0.6이상 1.5미만	30
					0.6미만	20
	글표				0.8이상	30
			구두	환산점수의 합	0.4이상 0.8미만	20
		국내학술대	1회		0.4미만	10
			포스터	환산점수의 합	0.4이상	20
				전인공구의 합	0.4미만	10
※ 연구실	적은 최근	3년 이내 실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ISSN	또는 ISBN이 있는 실적	
				nain airi	A+	200
			식신	전학기 학점	A°	180
성적 평가	대학원	원/학부 성적	(신)	입생의 경우	B+	160
0 -1 021	OII 10	_, ,, ,	석사:	학부 평균 평점 석사 평균 평점)	B°	140
			박사 :	석사 평균 평점)	C+	120
					C°	100
					상	100
			연구 성실도		중	80
연구 능력					하	60
라고 유학					상	100
		연	구과제 참여도		중	80
					하	60
총 계 (점)	젿	5 E	A: 700이상 B: 500이상~ C: 300이상~ D: 300미만	700미만 500미만	판정결과 1	할 / 불

* 환산POINT 합계가 1000점 만점 중 취득한 환산 POINT 등급 기준 C등급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함.

- 13

[별지 제1호 서식]부록 2

1.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논문편수 환산공식

주저자 표기	주저자 표기가 있는 경우										
▶ 참여대학원생 논문실적 1건의 환산편수 = (주저자 중 참여		1. <자	널 논문 환산 편	수에 대한 예시>							
대학원생 수(A)×주저자 1명의 논문 환산편수×저널별 가중 치(P)) + (기타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수(B)×기타저자 1명 의 논문 환산편수×저널별 가중치(P))	주저 자 수(m)	기타 저자 수(n)	주저자 1명의 논문 흰산 편수 min{1/(m+0.5),0.5}	기타자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1-주저지총점수)/n	전체 저자 1년 환산 편수 합						
▶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1	0	1	0	1						
(단, n=0일 때는 1/m) - m: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1	1	1/2	1/2	1						
- n: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1	2	1/2	1/4	1						
- T: 총 저자 수 (= m + n)	1	3	1/2	1/6	1	▶ 참여대학원생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n>0)	2	0	1/2	0	1	= P/T					
$= \{1-m*min(1/(m+0.5), 0.5)\}/n$	2	1	2/5	1/5	1	- T: 총 저자 수					
	2	2	2/5	1/10	1	- P: 저널별 가중치 ▶ 저널별 가중치(P)					
► 저널별 가중치(P) -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P=1	2	3	2/5	1/15	1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P=1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P=3	2	4	2/5	1/20	1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 기타국제학술지: P=1	3	0	1/3	0	1	A&HCI): P=3 -기타국제학술지: P=1					
▶ 예외조항	3	1	2/7	1/7	1	기디 국제 국 글 지・1 = 1					
- 단,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주저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	3	2	2/7	1/14	1						
고 알파벳 순서로 저자 순서를 정하는 경우, 각 저자 1인	3	3	2/7	1/21	1						
의 논문 환산 편수는 P/T로 한다	3	4	2/7	1/28	1						
▶ 기타(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함)	4	0	1/4	0	1						
가.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4	1	2/9	1/9	1						
※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4	2	2/9	1/18	1						
나. 교신저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m=1 경우로 간주함.	4	3	2/9	1/27	1						

2. 학술저서 환산 편수 공식

- ▶ 학술 저서 환산 편수 공식 = (P*S/T)
 - T: 총 저자 수
 - P(국어/외국어 가중치): 국어 학술저서=2, 외국어 학술저서=3
 - S(신간/개정판 가중치) : 신간 학술저서 = 1, 개정판 학술저서 = 0.6

〈대학원생 학술저서 인정기준 [사회과학 분야] 〉

- 1) 학술적 가치를 지닌 학술저서에 한함(교과서, 교양도서, 연구용역보고서, 기존 발간 논문을 편집한 저서 등 제외).
- 2) 학술저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저서업적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3) 저서의 경우, 패널 심사위원의 검증을 거침.
- 4) 번역서의 경우, 학술저서에 한하며 패널 심사위원의 검증을 거침
- 5) 개정판의 경우, 기존에 출판한 책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출판한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책을 재출판하는 1쇄, 2쇄 등의 개념은 '개정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단순 오기재 수정 등도 인정하지 않음)

3. 학술대회 환산편수 공식 = (P/T)

<국제학술대회>

- T: 총 저자 수
- P(가중치): 국제학술대회발표(전문)=2, 국제학술대회발표(초록)=1.5
- <국내학술대회>
- T: 총 저자 수
- P(가중치): 국내학술대회발표(전문)=1, 국내학술대회발표(초록)=0.8

- 15 -

[별지 제2호 서식]

BK21 four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사업단(팀)명**: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사업단(팀)장 : 김정겸)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BK21폴러스 four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BK21 four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 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 인합니다.
- 2.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 하겠습니다.
-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각 개인의 통장·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BK21 four 사업 BK 참여대학원생 연구계획서

인적사항	성명	학 번
한식사용	[]과정 ()학기 /수료 혹	- 연구생 지도 교수
관심분야 (주제)		
연구주제		
연구주제 선정 배경		
세계시민교육 과의 연관성		

BK21 four 사업 BK장학생 포기 사유서

과 정:

이 름:

학 번:

지도교수 :

본인은 _____학년도 BK21 four 사업 연구 장학생으로 지원 받는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포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사 유 :

본 인: (인)

지도교수 : (인)

충남대학교 BK21 four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장 귀하

BK21 four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신진연구인력 지원서

접수번호:									
지원직급	급 (해당란에 0표)	BK교수	() 빅	사후연구	원 []				
								사 진	
	국문		성	별 닏	ł ()	બ ()	3Cm×4Cm	
성 명	영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한자		주민등록	<u>번</u> 호:					
	출신학교 및 학교	ŀ	학우	취득기	간(년·윌·일	실)		학 위 명	
				~					
				~					
				~					
				~					
전 공	학사:	석사			박사:				
평균평점(G	. P.A) : 학사(만	점:] 석시	H E	점:) 박사(ļ	만점:)	
⋆ 근무처:	역 (대표경력 1개! 근무기간 (부터~끼								
연락처 • 주소(우)	편번호: -	1							
 전화(지역 e-mail: 	역번호:	1			* 🛱	대폰:			

이 력 서

1. 학력 및 경력

지원 직급 (해당란에 0표)	BKī	교수[]	박사후연구원	[]	성	명	(한글) (한자)		
			학 력	및	경	력			
근 무 기	간(부터	[~] 까지)	2	무 기	Ⅰ 관	명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 및 경력란에 기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직급	BK교수 ()	박사후연구원 []		п	(한글)
(해당란에 0표)	DVM- ()	キベチセナゼ ()	성	명	(한자)

		연 구 실 적 목 록(학위논문을 포함한 연	구실적을	발표년월 순으로 작	성]	
번호	구분	연구실적제목	발표자 총수	발표기관 또는 학술지명	발표년월	비고

- 1. 연구실적 목록의 구분란는 논문, 저서, 편역, 번역 등을 기재하십시오.
- 2. 연구실적 목록의 비고란에는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 또는 공동을 기입하십시오.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신진연구인력 전공심사 기준 및 조서

구분	Ī	교육학	과			전	공분야			세계	시민교	.육
지원자	성명						년월일 -					
심사구분		심시	사기 준			배점	(기준점수))		심사의견	꾜	경점
	학 사	교육	육학 , 국제 타	학	과		치 (5) 사 (3) 일 치 (1))	()과		(5)
학력과 전공분야와	석 사	교육	육학 , 국제 타	전공분	본야	일 유 불	치 (10 사 (6) 일 치 (3))	()분야		(10)
의 일치정도	박 사	교육	육학 , 국제 타	전공분	본야	일 유 불 (치 (15 사 (10 일 치 (5)) ()분야		(15)
				1	소		계					(30)
	최종	QE.	일 치			교육, 협력	비교교육 관련	육,		(10)		(10)
연구실적물	학위논		구 사 불일치	교육계' 기타			결			(7)		(10)
과 전공분야 와의 일치정 도	기타 연구 실적물 -		일 치 유 사 불일치		국제 교	협력 육계(교육, 비교교육, 협력 관련 육계열 기타			(10) (7) (3)		(10)
						714	계			(0)		(20)
	관련 및 사 기여	회의 도			소		- 11					(10)
연구실적의 질적수준	연구 창의											(5)
	연구 체계											(5)
			1	(3	3) 1	<u> </u>	4					(20)
	교육・연	연구의	발전기	가능성		우	월함 수함 통이하임	임		(15~11) (10~6) (5~1)		(30)
발전가능성	관련분0	 네트	트워크	확대 기		널 무	1월함 '수함 .통이하임	임		(15~11) (10~6) (5~1)		
		④ 소 계							(30)			
⑤ 계				(1)+(2)	+(3)+(4)					(100)

위와 같이 심사하여 제출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BK21 four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면접 심사 조서

구분	교육학과	. 	전공분야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평 <i>7</i> (평가는 해당린	가 항 목 !○표하고, 우	A (20)	B (18)	C (16)	D (14)	E (12)	평가 점수		
① 전문성	관련지식수 이해도, 내용		내용에 대한 도, 등						
② 연구역량	연구계획, 학	학술활동	경기 등						
③ 교육역량	교육과정 가	발, 학	생지도 계획 등						
④ 네트워크			전문기관, 학계 크 확대 가능성						
⑤ 종 합	전반적 태도	전반적 태도, 특성 및 질의응답 등							
"D" 이하평 (1개항목이 기자									

위와 같이 심사하여 제출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BK21 four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단장 귀하

참여교수 성과급 기준표

	평 2	가 항 목		기준	실적(편수)	환산Point
		SCL S	SCIE. SSCI.	주저자 또는 교	신저자 참여 2편 이상	200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참여 1편	180
		A&HC	I, SCOPUS	공동저자 참여	50	
					3이상	100
				하사저人이 하	2이상 3미만	90
			등재(후보지)		1이상 2미만	80
			0 / (1 / 1 / 1 / 1 / 1		0.5이상 1미만	70
					0.3이상 0.5미만	50
	논문	국내 논문			0.2이상 0.3미만	30
					3이상	50
					2이상 3미만	40
			일반지	환산점수의 합	1이상 2미만	30
					0.5이상 1미만	20
					0.3이상 0.5미만	10
연구 실적					2이상	100
			저서	환산점수의 합	1이상 2미만	90
			7474		0.5이상 1미만	80
					0.5미만	70
				= 11 = 1 = 0 = 0	1.5이상	60
			구두	환산점수의 합	0.6이상 1.5미만	50
		국제학술대	H회 		0.6미만	40
				크 니 된 사 이 크	1.5이상	40
	학술		포스터	환산점수의 합	0.6이상 1.5미만	30
	발표				0.6미만	20
			구두	환산점수의 합	0.8이상 0.4이상 0.8미만	30 20
		ᄀᆱᇵᄉᄗ		[완산삼구의 밥	0.4이정 0.8미인	10
		국내학술디	11외		0.4미년	20
			포스터	환산점수의 합	0.4이당	10
					0.4미인	10
	과의 실적				또는 ISBN이 있는 실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상	100
			사업 기여도		중	80
사업기여도					하	60
MENGT					상	100
		대학원	원생 지도 기여의	Ē	중	80
					하	60
총 계 (점)	젿	등급	A: 500이상 B: 300이상~5 C: 200이상~3 D: 200미만			

[※] 환산POINT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함.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참여인력 근무성적평정서

펴전	대상기	フ :	부터	까지
 \circ	4101	1.7.		7/1/1

Γ	성명	소속	직위	현 직급 임용일	현 보직일

1	다다	어ㅁ
١.		$_{\rm H}$

2. 근무평정표 (100점)

		업무 비중 (%) ⑦	평정요소					
일련	성과목표		А	В	С	D	Е	
번호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매우 우수하다 (20점)	우수하다 (18점)	보통이다 (16점)	부족이다 (14점)	매우 부족하다 (12점)	평정소견
1								
2								
3								
추가 업무								
추가 업무								

비고

- 1) 근무평점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2) 각 평정요소별로 매우우수(A) 우수(B) 보통(©) 부족(©) 매우부족(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매우부족(⑤)은 원래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부족(⑥)은 원래 계획에 미달한 경우, 보통(⑥)은 원래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B)는 원래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매우우수(A)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다.
- 3) 각 평정요소를 합산하여 종합평정 등급을 결정한다.(A : 100~80점 / B : 79~60점 / C : 59~40점 / D : 39~20점 / E : 19점 이하)

3. 종합평가

종합평정 등급	종합평정 점수	종합평정 의견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BK참여대학원생 선정 기준 조견표

	평 가 항 목			기준	환산Point	
		901.9	CIE SSCI	주저자 또는 교선	200	
		SCI, SCIE, SSCI, A&HCI, SCOPUS		주저자 또는	180	
				공동저자 참여	50	
					3이상	100
				환산점수의 합	2이상 3미만	90
			등재(후보지)		1이상 2미만	80
			등재(우도시)		0.5이상 1미만	70
					0.3이상 0.5미만	50
	논문	국내 논문			0.2이상 0.3미만	30
	는문			환산점수의 합	3이상	50
					2이상 3미만	40
			일반지		1이상 2미만	30
					0.5이상 1미만	20
					0.3이상 0.5미만	10
연구 실적					2이상	100
			저서	환산점수의 합	1이상 2미만	90
			N/N		0.5이상 1미만	80
					0.5미만	70
	학술 발표 ⁻			환산점수의 합	1.5이상	60
			구두		0.6이상 1.5미만	50
		국제학술[회	환산점수의 합	0.6미만	40
					1.5이상	40
			포스터		0.6이상 1.5미만	30
				환산점수의 합	0.6미만	20
					0.8이상 0.4이상 0.8미만	30 20
		71112145	구두			
		국내학술[1외		0.4미만 0.4이상	10 20
			포스터	환산점수의 합	0.4이정	10
※ 연구실건	L 덕은 치근	 1년 이내 설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ISSN	^{0.4미년} 또는 ISBN이 있는 실적	
~	,	이에 =	- 12 71221	130,51, 10014	상	100
	 연구 성실도				· 중	80
	선구 성설도				하	60
연구 능력	연구과제 참여도				상	100
					중	80
					하	60
총 계 (점)	계 (점) 점 등급 A: 700이상 용급 B: 5000)상~700미만 C: 300이상~500미만 D: 300미만					

※ 환산POINT 합계가 1000점 만점 중 취득한 환산 POINT 등급 기준 C등급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함.